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檢討報告書

【이성수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3. 11. 27.

社會建設委員會 專門委員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檢討報告書

1. 경 과

의안 제272호로 2023년 11월 10일 이성수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3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 조성 및 시설 확충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지원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국민건강증진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3. 11. 9.~ 11. 13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 조성 및 시설 확충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
○ 주요 내용으로

- 제명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이고 5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.
-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,
- 안 제3조에서는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책무를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4조에서는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,
- 안 제5조에서는 맨발 보행로의 조성·확충, 시설의 설치· 보수, 홍보 및 교육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, 해당 사업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○ 검토결과

- 특별한 운동 기구가 필요 없고 비용이 들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신체활동으로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도가 전국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구민들이 안전하게 맨발 걷기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복지 증진 및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참고 자료

1 국민건강증진법

제3조(책임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.

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6조(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,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~ ③(생략)